

# JKI 회계법인 월간 뉴스레터

MONTLY NEWSLETTER OF JKI ACCOUNTING & TAX SERVICES

2017년 11월호 (2017-4)

## CONTENTS

- a. 인사말
- b. 세무정보
  - 세무 기록의 적절한 보관 기관
  - 2017 비즈니스 세금 절약 2탄
  - 의료 보험비의 세금 공제
- c. 11월달의 중요한 Date
- d. 광고

## 인사말

안녕하세요

11월은 한해의 경영 성과를 리뷰하고 내년 세금보고를 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달입니다. 채점 후의 경험지를 검토하지 낳은 아이는 성적이 나쁘다는 말처럼 경영자에게는 손익 결산서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매출 신장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희 회계법인은 11월 말까지 각 고객들의 손익 결산서를 준비를 해드려 12월달에는 내년 세금보고시 세금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1/15/2018에 4분기 소득세 예납을 통해 개인 소득세 납부시 부담이 안 될 수하겠습니다. 각 사업체 담당자 분께 이메일을 통해 손익계산서 준비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청 드릴 것이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원 CPA 드림

## 2018 Tax - Timeline

손익 계산서 준비 완료 •11/30/2017	4분기 소득세 예납 •1/15/2018	C-Corp & 개인 Tax Return •4/17/2018
--------------------------------	-----------------------------	--------------------------------------------



Tax Return  
Simulation 후  
고객과 상담  
•12/31/2017

Partnership  
& S-Corp Tax  
Return  
•3/15/2018

# 세무정보

## 세무 기록의 적절한 보관 기간

세금 보고 후에 관련 자료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할 것인가의 답은 어떤 문서가 세금보고에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과 공제 항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은 세금보고를 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세금 보고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은 이상 국세청이 해당 세금 보고를 감사할 수 있는 법정 시효 기간이 3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3년이 지난 세금 보고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산에 관련된 기록은 더 오랫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 부동산 또는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장비, 가구 같은 자산은 샀을 때 가격을 감가상각을 통해 수년에 나누어 비용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처리한 감가상각비용은 자산을 처분할 때 손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감가상각의 근거가 되는 구매와 처분 관련 자산 서류는 세금 보고한 후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을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치가 없어진 증권 (worthless securities)이나 불량 채권(bad debts)으로 손실을 보고했다면 그 해당 기록의 보관 연수는 7년입니다.

국세청이 3년 이상 오래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세금 보고의 소득 금액과 감사를 통해 밝혀진 소득 금액에 25% 이상 차이가 있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 세금 보고 감사의 법정 시효가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세금 보고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세금 보고에 사기성(fraudulent return)이 있다고 밝혀지면 법정 시효는 무한정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세금 보고 자료 또한 그것에 맞게 보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 보고서는 지난 일년 동안 얼마만큼의 소득을 올렸고, 또 어떤 비용을 지출했는가를 기록하는 양식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소득과 비용을 세법에 맞게 계산한 후에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국세청과 주 정부에 납부합니다. 세금 보고서상의 소득, 비용 공제 및 기타 정보는 보고하는 납세자에게 사실 증명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를 입증 책임(Burden of Proof)이라고 합니다. 세금 보고에 사용된 비용 청구서, 영수증, 수표 사본, 혹은 관련된 다른 문서들을 잘 정리하여 보관해야 입증 책임을 이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오바마케어로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벌금과 보험료 정부 보조금 내용이 세금 보고에 보고되므로 본인과 가족의 보험 관련 서류 또한 소득과 공제 서류와 같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정리된 기록은 정확한 세금 보고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혹시 있을 수 있는 감사에 쉽게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 2017 비즈니스 세금 절약 2 단

2017년도 3개월 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 지난 한 해 동안의 비즈니스 성과를 돌아보며 그에 맞는 절세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되어 좋은 결과를 거두었거나 계획했던 것보다 부진했더라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절세방법을 찾아 많은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절세는 계획, Planning을 통해 가능하며 회계연도가 3개월이 남은 이 시점 꼭 회계사와 절세 상담을 필요할 때입니다.

이번 달 소식지로부터 총 3탄으로 절세 계획을 알려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4. 각종 비용의 결제:** 만약 종업원에게 연말 보너스를 준다면 반드시 12 월 31 일 이전에 지급해야 합니다. 아직 내지 않은 각종 공과금이니 앞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 항목을 잘 정리하여 연말이 지나기 전에 결제 해야 합니다. 임대료와 보험료 등의 미리 내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장 현금이 부족하다면 신용카드로 먼저 비용을 결제해도 괜찮습니다. 신용카드는 카드를 사용할 때 비용처리 되므로 올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내년에 갚아도 올해의 경비로 처리 됩니다.

**5. 필요 없는 자산 처분:** 많은 Country 는 비지니스에 사용되는 장비와 가구 같은 자산에 대해서 12/31 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계산됩니다. 만약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장비가 있다면 미처 처분하여 다음 해의 재산세 고지서에 포함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6 회사 송년모임:** 식사와 유흥을 위해 사용되는 접대비는 보통 그 비용의 50% 만이 세금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 연말에 파티를 열어 식사와 오락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100% 세금 공제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참고로 직원을 위하여 일 년에 한번씩 하는 피크닉도 100% 공제되는 접대비로 분류되나 그 비용을 50% 공제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료 보험비의 세금공제

고객들과 상담을 할 때 종종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의료 관련한 등 각종 보험 상품의 납입 비용이 세금 절감 효과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회사에서 의료 보험을 들어주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룹 보험이라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또 회사가 함께 부담을 해 주지만,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개인이 가입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높고,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기 때문에 그 비용적인 부담이 더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이 많은 경우는 그 부담이 더 큰데, 이렇게 큰 지출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라도 있으면 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금 효과가 있는 비용은 의료 보험, 치과 보험, 장기 요양 보험의 납입금으로 제한하는데, 납입금은 납세자 본인 뿐만 아니라 세금 보고 시, 함께 합산 신고를 하는 배우자와 만 27 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양 가족에 대한 보험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위에 정의한 보험료를 세금보고 시 소득 공제 항목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 세가지 경우의 사업체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1. 자영업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세금 보고 시, "Schedule C, Profit or Loss From Business"이라는 양식에 사업체 소득 및 비용을 입력하게 되는데, 앞서 정의한 의료관련 비용들을 이 양식에 하나의 사업체 운영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 상품이 납세자 본인 또는 사업체 명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두 사람 이상의 동업으로 파트너쉽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Schedule K-1 (Form 1065), Partner's Share of Income, Deductions, Credits, etc."에 포함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약 보험 상품 가입자가 회사이고 그 수혜자가 납세자인 파트너라면 바로 회사의 운영 비용으로 공제하면 됩니다. 만약, 가입자가 회사가 아니라 파트너 본인이고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면, 회사가 이 금액만큼은 파트너에게 다시

Reimbursement 형태로 지급해주어 본인 부담으로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도록 해주고, 그 금액을 Schedule K-1에 파트너에게 제공한 복지혜택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3. 2%이상의 소유권을 보유한 S- Corporation 의 주주로 법인의 소득을 급여 형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의 납세자들입니다. S-Corp 은 Small Corporation 의 세법상 약자로 소규모 사업체를 의미하는데, 자영업과 법인의 장점을 고루 섞은 형태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많이 보이는 사업체 형태이기도 하다. 만약 보험 상품가입자가 S-Corp 회사이고 그 수혜자가 납세자인 주주라면 바로 회사의 운영 비용으로 공제하면 된다. 만약, 가입자가 회사가 아니라 주주 본인이고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면, 파트너쉽과 동일하게 회사가 이 금액만큼은 주주에게 다시 지급해준다. 그리고 이의 세금보고 방식은, 그 금액을 주주에게 제공한 급여 형태로 인식하여, 연간 총 급여통지서인 W-2 에 급여에 합산하여 보고한다. 즉 주주는 보험료와 Reasonable Salary 를 받을 경우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 11 월의 중요한 DATE

날짜	회계 법인 업무	고객에 요청사항 및 노트
11/15/17 (수)	10 월 달 급여세 납부	
11/20/17 (월)	10 월달 Sales Tax 계산 및 납부	10 월달 세일즈 정보 혹은 은행 Statement 를 11/16 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

- 11/18 ~ 11/24 일 뉴욕에 사시는 장모님 방문으로 사무실을 비우지만 22 일 (수요일) 오전까지 정상 업무를 합니다.